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김부겸 (국민권익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이 개정(’21. 12. 7. 공포, ’22. 6. 8.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총괄 업무 수행을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태 조사 및 자료의 수집·관리·분석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등 관련 규정 정비

- 1) 법 위반행위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인적사항도 포함함(안 제29조)
- 2)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확인할 경우 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봉인·보관하는 자료를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음을 명시함(안 제32조)
- 3) 공공기관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등에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포함함(안 제44조)

나. 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·관리·분석을 위하여
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41조의2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신고자(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)의 인적사항

제3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·보관하는 자료를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3조제4항 중 “사항(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)”을 “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
제33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제1호의 신고자 인적사항
2.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(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·보관하는 자료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실태조사 등)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·관리·분석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

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, 조사목적,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4조제3호 중 “법 제13조”를 “법 제13조, 제13조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제33조(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
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) ① ~
③ (생략)

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(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)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,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<신 설>

불인 · 보관하는 자료를 신고자
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서는
아니 된다.

제33조(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
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) ① ~
③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1.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
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제1호
의 신고자 인적사항

2.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
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
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
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
경우(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
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같
은 조 제3항에 따라 불인·보

⑤ (생 략)

<신 설>

제44조(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)
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
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
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, 같은
법 시행령 제19조제1호, 제2호
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
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
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2. (생 략)

3.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

관하는 자료

⑤ (현행과 같음)

제41조의2(실태조사 등) ① 국민
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
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
집·관리·분석 등을 위하여 소
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또
는 서면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
으며,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
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
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
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
조사일시, 조사목적, 조사장소
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
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
다.

제44조(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)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13조, 제13조의2 -----

법 위반행위의 신고·처리 등 에 관한 사무 4.·5. (생략)	----- ----- 4.·5. (현행과 같음)
--	---